

## (12) 지방세 지출보고서

###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2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50,383,362,051
	비과세	31,473,440,959
	감면	18,909,921,092
지방세 징수액(B)		212,756,472,500
비과세·감면율(A/A+B)		19.1

####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2년(결산)	비중
<b>총 계</b>		50,383,362,051	100
1	일반공공행정	23,842,358,306	47.32
2	공공질서 및 안전	184,855,631	0.37
3	교육	4,485,645,740	8.90
4	문화 및 관광	3,303,992,112	6.56
5	환경	63,161,323	0.13
6	사회복지	7,292,199,550	14.47
7	보건	22,309,728	0.04
8	농림해양수산	9,776,957	0.02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52,128,509	3.08
10	교통 및 물류	1,714,589,993	3.40
11	국토 및 지역개발	268,312,712	0.53
12	과학기술	-	
13	국가	5,205,233,192	10.33
14	외국	28,800	0.00
15	기타	2,438,769,498	4.84

### 3. 세목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2년(결산)	비중
<b>총 계</b>		50,383,362,051	
	보통세	49,821,395,712	98.88
	취득세	12,132,600,170	24.35
	등록면허세	148,025,350	0.30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2,139,547,678	4.26
	재산세	34,653,510,443	69.56
	자동차세	747,712,071	1.50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	
	목적세	561,966,339	1.12
	지역자원시설세	561,966,339	1.12
	지방교육세		

### 4. 비과세 ·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19,860,484,020	22,220,818,889	2,360,334,869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81,891,660	63,793,060	-18,098,60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07,675,111	144,763,118	37,088,007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1,271,913,877	1,383,205,839	111,291,962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59,115,640	29,777,400	-129,338,24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426,991,533	184,855,631	-242,135,902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136,928,356	4,388,760,887	251,832,53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89,437,760	96,884,853	7,447,09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3,473,788,578	3,296,830,223	-176,958,355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8,311,969	7,161,889	-1,150,080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57,486,952	63,161,323	5,674,371
장애인에 대한 감면	755,792,363	689,448,818	-66,343,545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309,885,269	312,585,273	2,700,00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7,764,324	133,888,013	116,123,68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4,171,409	162,578,910	-21,592,499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6,374,860	1,500,000	-4,874,86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994,732,464	5,201,071,174	206,338,7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128,275,990	107,738,250	-20,537,740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727,734,500	553,053,760	-174,680,74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18,268,227	130,335,042	12,066,815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280	310	3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0	22,309,728	22,309,728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247,255	1,189,318	-57,937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1,776,000	0	-1,776,00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8,471,309	7,180,960	-1,290,349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321,405	1,406,679	85,274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5,669,430	6,686,330	1,016,90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0	1,676,460	1,676,46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28,561	0	-128,561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32,622,750	1,542,958,409	1,510,335,659
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7,448	807,310	189,862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6,271,909	6,377,433	105,52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314,746,160	356,898,280	42,152,12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508,565,260	779,354,820	270,789,56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43,363,350	571,959,460	228,596,11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19,325,760	28,336,200	-190,989,5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226,126,030	129,391,110	-1,096,734,9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96,674,032	110,585,402	13,911,370
국가에 대한 비과세	4,908,972,804	5,161,742,999	252,770,195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0	43,486,800	43,486,80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678	3,393	-1,285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38,400	28,800	-9,600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14,056,000	3,391,500	-10,664,500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717,370,590	2,181,152,040	463,781,45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632,751,400	0	-632,751,40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5,057,646	206,620,255	11,562,609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14,149,276	14,337,685	188,409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0,595,410	11,638,698	1,043,288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2,809,970	21,629,320	8,819,350

##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일반공공행정</b>		<b>합 계</b>	<b>23,842,358,306</b>
1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b>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b>소 계</b>	<b>22,220,818,889</b>
		취 득 세	908,049,990
		등록면허세	672,354,156
		주 민 세	20,371,200,724
		재 산 세	5,913,932
		자동차세	397,000
		지역자원시설세	262,903,087
		-	-
2	<b>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b>소 계</b>	<b>63,793,060</b>
		취 득 세	63,793,060
3	<b>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b>소 계</b>	<b>144,763,118</b>
		재 산 세	141,500,055
		지역자원시설세	3,263,063
		-	-
4	<b>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b>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b>소 계</b>	<b>1,383,205,839</b>
		재 산 세	1,380,122,169
		지역자원시설세	3,083,670
		-	-
5	<b>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b>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b>소 계</b>	<b>29,777,400</b>
		취 득 세	29,541,750
		재 산 세	235,650
		-	-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공공질서 및 안전</b>		<b>합 계</b>	<b>184,855,631</b>
6	<b>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b>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감면·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 (경북)소상공인이 취득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양산)상업용·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양산)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 (남원)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시군구 조례)감염병 피해 및 복구지원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면 - (취득세 100%)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상속 취득	<b>소 계</b>	<b>184,855,631</b>
		취 득 세	11,642,450
		자동차세	173,207,851
		지역자원시설세	5,330
		-	-
		-	-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교 육</b>		<b>합 계</b>	<b>4,485,645,740</b>
7	<b>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폐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b>소 계</b>	<b>4,388,760,887</b>
		주 민 세	850,536,586
		재 산 세	3,419,490,235
		지역자원시설세	118,734,066
		-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8	<b>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b>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96,884,853
		재산세	96,884,853
		-	-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문화 및 관광</b>		<b>합 계</b>	<b>3,303,992,112</b>
9	<b>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b>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3,296,830,223
		취득세	354,857,210
		주민세	80,420,000
		재산세	2,751,048,490
		지역자원시설세	110,504,523
		-	-
10	<b>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7,161,889
		재산세	7,161,889
		-	-

## 5. 환경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환경보호</b>		<b>합 계</b>	<b>63,161,323</b>
11	<b>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b>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서울 서초)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b>소 계</b>	<b>63,161,323</b>
		재 산 세	63,161,323
		-	-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사회복지</b>		<b>합 계</b>	<b>7,292,199,550</b>
12	<b>장애인에 대한 감면</b>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b>소 계</b>	<b>689,448,818</b>
		취 득 세	282,852,650
		자동차세	406,596,168
-	-	-	-
13	<b>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b>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 (감염병전문병원 60%)감면	<b>소 계</b>	<b>130,335,042</b>
		주 민 세	70,400,400
		재 산 세	56,258,479
		등록면허세	289,200
		지역자원시설세	3,386,963
-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 (제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소득세 50% 천안)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14	<b>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b>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40만원 한도)(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 ①, §22의2②) - (제주)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제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b>소 계</b>	<b>312,585,273</b>
		취 득 세	121,325,020
		재 산 세	191,260,253
		-	-
15	<b>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 - 무료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b>소 계</b>	<b>133,888,013</b>
		취 득 세	133,576,910
		재 산 세	311,103
		-	-
16	<b>권익증진을 위한 감면</b>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3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b>소 계</b>	<b>310</b>
		재 산 세	310
		-	-
17	<b>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b>소 계</b>	<b>162,578,910</b>
		취 득 세	70,553,360
		재 산 세	11,174,800
		자동차세	80,756,261
		지역자원시설세	94,489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18	<b>주택거래에 대한 감면</b>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1,500,000
		취득세	1,500,000
		-	-
19	<b>임대주택에 대한 감면</b>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임대주택 60㎡이하 취득세 면제, 60~85㎡(20호 이상) 50% 감면, 매입임대주택 60㎡이하 취득세 면제, 20호 이상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적별 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적별 50~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폐지)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5)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4)(폐지)	소 계	5,201,071,174
		취득세	3,721,772,610
		재산세	1,479,298,564
		-	-
20	<b>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b> -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저장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 감면(225만원限)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소 계	107,738,25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li> <li>-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폐지)</li> <li>-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공시가격 6억원限)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li> </ul>	등록면허세	106,473,900
		재산세	1,264,350
		-	-
21	<b>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li> <li>- (제주)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li> <li>-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폐지)</li> <li>-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50~100%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li> </ul>	소 계	553,053,760
		취 득 세	553,053,760
		-	-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보건</b>		<b>합 계</b>	<b>22,309,728</b>
22	<b>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li> <li>-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2)</li> <li>-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감염병전문병원 8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의2)</li> </ul>	소 계	22,309,728
		취 득 세	27,000
		재 산 세	22,282,728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농림해양수산</b>		<b>합 계</b>	<b>9,776,957</b>
23	<b>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b>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2호)	<b>소 계</b>	<b>1,189,318</b>
		재 산 세	1,189,318
		-	-
24	<b>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14④)	<b>소 계</b>	<b>7,180,960</b>
		재 산 세	7,180,960
		-	-
25	<b>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①) -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및 법인등기등록면허세 100% 감면(조례로 조정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15②)	<b>소 계</b>	<b>1,406,679</b>
		재 산 세	1,406,679
		-	-

##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산업·중소기업</b>		<b>합 계</b>	<b>1,552,128,509</b>
26	<b>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b>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①) -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②)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b>소 계</b>	<b>1,542,958,409</b>
		취 득 세	1,521,401,290
		재 산 세	21,180,359
		지역자원시설세	376,760
		-	-
27	<b>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감면,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b>소 계</b>	<b>807,310</b>
		취 득 세	807,310
		-	-
28	<b>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b>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登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 50% 감면,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①, §57의2⑤ 1·2·4·5·6·7·8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폐지)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b>소 계</b>	<b>6,686,330</b>
		취 득 세	6,686,330
		-	-
		-	-
29	<b>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b>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7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3,5호, §57의2⑤ 3호)	<b>소 계</b>	<b>1,676,460</b>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취 득 세	1,676,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li> <li>-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 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폐지)</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⑤)</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④)</li> </ul>	-	-

## 10. 교통 및 물류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수송 및 교통</b>	<b>합 계</b>	<b>1,714,589,993</b>
	<b>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b>	<b>소 계</b>	<b>6,377,43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li> <li>-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li> <li>-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li> <li>-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100%감면(조례로 조정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li> </ul>	재 산 세	6,377,433
3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31	<b>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b>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356,898,280
		취 득 세	356,898,280
		-	-
32	<b>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b>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90만원 이하) 및 공제(40만원초과 시 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및 공제(140만원초과 1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 (제주)전기자동차로서 초소형 승용자동차(비영업용)자동차세 감면	소 계	779,354,820
		취 득 세	779,354,820
		-	-
33	<b>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75~100%)(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④)	소 계	571,959,460
		취 득 세	571,959,460
		-	-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국토 및 지역개발</b>		<b>합 계</b>	<b>268,312,712</b>
34	<b>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28,336,200
		취 득 세	28,336,200
		-	-
35	<b>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b>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75% 감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75%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④)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60제곱미터	소 계	129,391,110
		취 득 세	129,391,11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75% 감면, 85 제곱미터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종전 부동산 가액합계 내에서는 취득세 면제하고 가액초과분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에 한하여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①, §74의2③3)</li> <li>- 복합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현물약정 체결한 경우 취득세 면제, 미체결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③1)</li> <li>-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③2)</li> </ul>		
36	<b>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li> <li>-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li> <li>-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li> </ul>	<b>소 계</b>	<b>110,585,402</b>
		<b>재 산 세</b>	<b>110,585,402</b>
		-	-
		-	-

## 12. 과학기술

##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국 가</b>		<b>합 계</b>	<b>5,205,233,192</b>
37	<b>국가에 대한 비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li> <li>-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li> </ul>	<b>소 계</b>	<b>5,161,742,999</b>
		취 득 세	142,019,400
		등록면허세	20,986,600
		주 민 세	461,328,586
		재 산 세	4,489,129,699
		자동차세	3,104,064
		지역자원시설세	45,174,65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38	<b>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43,486,800
		취 득 세	43,486,800
39	<b>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3,393
		지역자원시설세	3,393
		-	-

##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외 국</b>		합 계	28,800
40	<b>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b>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28,800
		주 민 세	28,800
		-	-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b>기 타</b>		합 계	2,438,769,498
41	<b>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b>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3,391,500
		취 득 세	3,391,500
		-	-
42	<b>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b>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2,181,152,040
		취 득 세	2,181,152,04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43	<b>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b>	<b>소 계</b>	<b>206,620,255</b>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취 득 세	113,493,400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등록면허세	18,657,000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자동차세	74,469,855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 ①)	-	-	
44	<b>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b>	<b>소 계</b>	<b>14,337,685</b>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지역자원시설세	14,337,685
	-	-	-
45	<b>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b>	<b>소 계</b>	<b>11,638,698</b>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 ① 1호, §87② 1호)	취 득 세	11,638,698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46	<b>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b>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 2)	<b>소 계</b>	21,629,320
		등록면허세	1,221,650
		주 민 세	4,479,150
		재 산 세	12,165,920
		자동차세	3,663,940
		지역자원시설세	98,660
		-	-
		-	-